

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-62호

「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안동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6일

안동시의회의장



「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」 예고

1. 제정이유

안동시의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·예술 분야의 육성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사업, 정산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0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2. 6. ~ 2021. 12. 11.(5일 이상)

4. 의견제출

「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21년 12월 11일까지 안동시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 · 성명(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, 팩스 또는 직접방문

1) 전자우편 : flora99@korea.kr

2) 주 소 : (우36691) 안동시 퇴계로 115(명륜동), 안동시의회

3) 팩 스 : 054-840-6409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■ 조례안명 :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(지원대상) 안동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
2.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

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개·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

2.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운영경비 일부
3.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

제5조(지원관리 등)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신청·교부·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
2.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, 회계과장, 전통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

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,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

2.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

제10조(위원 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○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박물관”이란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·고고(考古)·인류·민속·예술·동물·식물·광물·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·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
2. “미술관”이란 문화·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·조각·공예·건축·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·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박물관·미술관의 구분) ① 박물관은 그 설립·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3. 사립 박물관 : 「민법」, 「상법」,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박물관

제16조(등록 등)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(이하 “대도시 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립·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

장애에 등록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사립 박물관·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) ①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(경비 보조 등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,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.

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.

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